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-8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1월 18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21일

3. 제안이유
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기준에서 「최저보험료」 기준으로 개편 시행(2018.7.1.)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기준의 구체화(안 제3조)
 -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선정기준을 월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
- 나. 근거법령 보강(안 제3조제3호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18.12. 6. ~ 2018.12.26. (의견제출 없음)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.7.1.자로 개정 시행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성별이나 나이 등으로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던 평가소득 기준에서 연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, 근거법령 보강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였음.
- * 재산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, 소득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(18.7월 1단계, '22.7월 2단계 개편 시행), 「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」 국회 통과(17.3.30)
- 동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가 13,550원(2019년 기준, 2018.7월 기준으로 13,100원)으로 결정됨
- *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는 평가소득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보험료 세대도 있었으나, 개편 이후에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, 정액의 최저보험료($13,550\text{원}+1,150\text{원}=\text{국민 건강보험료}+\text{장기요양보험료}$)이상 납부

〈표 1〉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변경내역

| 연도별 | 2017.1월 | 2018.1월 | 2018.7월 | 2019.1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최저보험료 (건강보험료+ 노인장기요양보험료) | 3,820 (3,590+230) | 3,930 (3,660+270) | 14,060 (13,100+960) | 14,700 (13,550+1,150) |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=건강보험료×장기요양보험료율(1만분의 851)

- 이에, 현행 조례에서 정한 저소득 주민의 지원대상 보험료액이 월 10,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 개편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임
- 따라서, 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 세대, 한부모가족 세대 등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(13,550원) 이하인 세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. 이에, 본 개정 조례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- 다만,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의결·공포되더라도 한시적 감면 규정에 따라 월 10,000원 이하 기준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2018년 기준 월평균 632세대에 284만원 지급 또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,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.7.1.부터 시행을 대비하여 지원대상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표 2> 2018년도 마포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

| 구 분 | 연누적지원 | 월평균지원 | 지원금액 | 월평균 지원액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2018년 기준 | 7,578세대 | 632세대 | 34,136천원 | 2,844천원 |

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주요 내용

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

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는 적정한 부담을 하며,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편

□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·자동차 비중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

- (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) 성별,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폐지,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(13,100원)를 적용
- (재산 보험료 인하) 재산공제제도(재산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500~1,200만 원 까지 공제 후 보험료 부과)를 도입하여 339만 세대 재산 보험료 40%인하
- (자동차 보험료 인하) 29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55%인하
 - 보험료 면제 : 9년 이상 노후자동차, 생계형 차량(승합, 화물, 특수차), 소형차(배기량 1,6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)
 - 보험료 30% 감면 : 중형차(1,600cc 초과 3,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)

□ 소득·재산이 상위 2~3%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

- 지역가입자 중 상위 2% 소득 보유자(연소득 3,860만 원), 상위 3% 재산 보유자(재산과표 5억 9,700만 원)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

□ 보수(월급)외 소득이 많은 상위 1%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조정

-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,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(직장가입자 99%는 개편 전 수준 유지)

□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향상

- (소득요건) 연 소득 3,400만 원(과세소득 합산 기준)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
- (재산요건)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, 또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
- (부양요건)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

※ 단, 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·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·재산·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

②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총괄표

| 구 분 | 현 행 | 1단계('18.7월) | 2단계('22.7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소 득 보 험 료 | 평가소득 |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| 평가소득 폐지, 종합과세소득 적용 |
| | 최저보험료 | 3,660원 (부과점수 20점) |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, 13,100원 |
| | 소득평가율 | 연금, 근로 20% | 연금, 근로 30% |
| | 소득등급표 | 75등급 (500만원~4억9,900만원) | 97등급 (100만원 ~ 11억4,000만원) 정률 부과 |
| 지 역 가 입 자 | 재산보험료 | 공제금액 전월세 500만원 | 재산 4구간별 차등공제 • 1,200만원 이하 → 최대 1,200만원 • 1,201 ~ 2,700만원 → 850만원 • 2,701 ~ 5,000만원 → 500만원 • 5,000만원 초과 → 전월세만 재산 500만원 재산금액 5,000만원 |
| | 재산등급표 | 50등급 (100만원 ~ 30억원) | 60등급 (1 ~ 77억8,124만원) |
| | 계산식 | 재산과표 + {(전월세 - 기본공제액) × 30%} | {재산과표 + (전월세 × 30%)} - 기본공제액 |
| 자 동 차 보 험 료 | 차량종류 | 승용, 승합, 화물, 특수차 | 승용차만 부과 |
| | 사용연수 | 15년 미만 | 9년 미만 |
| | 배기량, 가액 | 7등급 구분 (가액 기준 없음) | 1,600cc 이하는 4천만원 이상만 부과 1,600cc 초과는 모두 부과 (배기량 기준 폐지) 4천만원 이상 |
| 직 장 가 입 자 | 보험료 상한 | 2,324,240원 (부과점수 12,680점) | '18.7월 기준 3,096,570원 (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) |
| |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| 4,873,440원 (보수월액 7,810만원) | '18.7월 기준 6,193,140원 (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) |
| |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| 2,436,720원 (소득월액 7,810만원) | '18.7월 기준 3,096,570원 (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) |
| | 부과대상 | 보수외소득 연 7,200만원 초과 | 연 보수외소득 3,400만원 초과 |
| 피 부 양 자 | 공제금액 | - | 3,400만원 |
| | 계산식 | (연 소득 ÷ 12월) × 보험료율의 절반 | {(연 소득 - 3,400만원) ÷ 12월} × 보험료율 |
| 피 부 양 자 | 소득요건 |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(각각 금융, 연금, 근로+기타소득) | 3,400만원 이하 ('17년 2인가구 기준증위소득 100%) 2,000만원 이하 ('17년 2인가구 기준증위소득 60%) |
| | 재산요건 | 재산 9억원 이하 | 5억4천만원 이하 5.4억(3.6억)초과 ~ 9억원 이하는 연 소득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3억6천만원 이하 |
| | 형제자매 | 인정 (소득 각 4천만원, 재산 3억원 이하) | 원칙적으로 제외 (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 등은 소득, 재산,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) 재산 1.8억원 이하 재산 1.2억원 이하 |

참고자료 2

| 국민건강보험법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|
|--|---|
| <p>법률 제16238호, 2019.1.15., 일부개정</p> <p>제69조(보험료)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7.4.18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수월액보험료: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. 소득월액보험료: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<p>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,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. <신설 2017.4.18.></p> | <p>대통령령 제29409호, 2018.12.24., 일부개정</p> <p>제32조(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) 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(이하 이 조에서 "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"라 한다)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.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.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.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: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</u> <p>[전문개정 2018.3.6.]</p> |

○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부칙 <제28693호, 2018. 3. 6.>

제2조(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)

-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(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)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.
1.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: 자격 변동일
 2.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: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
 3.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: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

○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근거

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|
|--|--|
| 법률 제16244호 2019. 1. 15., 일부개정 | 대통령령 제29411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 |
| <p>제9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)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개정 2011. 12. 31.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4조(장기요양보험료율)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851로 한다.</p> <p><개정 2018. 12. 24.></p> |

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9. 1. 1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312호, 2018. 12. 31., 일부개정.]

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 044-202-271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6항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월별 보험료액의 상한)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: 6,365,520원
2.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: 3,182,760원

제3조(월별 보험료액의 하한)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: 18,020원
2.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: 13,550원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부칙 <제2018-312호, 2018. 12. 31.>

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2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6항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3월 30일

보건복지부장관

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6항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월별 보험료액의 상한)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: 6,193,140원
-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: 3,096,570원

제3조(월별 보험료액의 하한)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: 17,460원
-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: 13,100원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